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중 앙 지 방 협 력 회 의 의 구 성 및
운 영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1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 기초자치단체 구성원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하여,
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각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
것임

3. 주요내용

-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중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’으로 기초
자치단체의 장 2인 보강(안제2조)
 - 현행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 기초자치단체 구성원은 1인으로, 시·군·
구의 각 상이한 행정환경을 충분히 대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
 - 시장·군수·구청장 각 1인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
회의 구성원에 기초자치단체장 2인을 증원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1. 00. ~ 2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위원장”을 “위원장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구성원 2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시장, 군수, 자치구청장 각 1인이 협력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지명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) 「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. <단서 신설>	제2조(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위 원장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구성원 2인---. 단, 시장, 군수, 자치구청장 각 1인이 협력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지명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121